

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

# 의원 발의 조례안

(1건)

거창군의회



- 목 차 -

의안번호	건 명	쪽수
2021-145	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1



#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(권순모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1-145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	2021. 11. 30.
발 의 자	권순모, 김종두, 최정환, 심재수, 권재경, 이재운, 김향란, 표주숙, 이흥희, 신재화, 박수자 의원

## 1. 제안 이유

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거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(안 제3조)
- 다. 협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(안 제4조)
- 라.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해 규정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마.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대해 규정(안 제7조, 안 제8조)
- 바. 운영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속가능발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환경과
- 라. 기타사항
  - 1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- 2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1. . . . ~ . . .
    - 나) 예고결과 :
  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거창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지속가능발전법」 제2조에 따른다.

**제3조(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)**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 및 자문하기 위해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소속으로 설치한다.

1. 지속가능발전 방향 및 정책의 제안·자문에 관한 사항
2.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3.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·연구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, 경제교통과장, 환경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 
이 경우 위촉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.

1. 환경, 경제, 보건, 복지, 교육, 문화예술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있는 사람
2.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주민, 기업체 임직원,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
**제5조(위원의 임기)**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의 해촉)**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**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, 협의회를 대표한다.

-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(회의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
1.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 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  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.

**제9조(운영위원회 등)** ①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0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